

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1. 14.

담양군의회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신설하여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하고자 함. 특히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재 유출을 예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제6항제1호 ~ 제2호)

- 장기재직기간 신설(제1호)
 -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
-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 5일 확대(제2호)
 -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(기존) 10일 → (개정) 15일

나. 새내기격려휴가 신설(안 제17조제7항)

-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3일 허가 가능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1. 14. ~ 11. 19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전단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 본문 중 “연가 일수”를 “연가일수”로, “수업휴가”를 “수업 휴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10일(2회)”를 “15일(4회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3회”를 “5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4회”를 “6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(2회 분할 가능)

⑦ 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6항을 따른다.

제18조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은 개정된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~ ③ (생략)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<u>같음</u>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	제15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 . - ----- -----.
제17조(특별휴가) ① ~ ③ (생략)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.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·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<u>연가 일수</u> 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<u>수업휴가</u> 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. ⑤ (생략) ⑥ 군수는 <u>10년</u>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	제17조(특별휴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가일수</u> ----- ----- <u>수업 휴가</u> ----- ----- .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 <u>5년</u> ----- -----

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.

<신 설>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(2회 분할 가능)
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(3회 분할 가능)
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5일(4회 분할 가능)

<신 설>

⑦ ~ ⑨ (생략)

제18조(공무 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

-----.

-----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(2회 분할 가능)

2. -----
-- 15일(4회) -----
--

3. -----
--5회 --

4. -----
--6회 -----

⑦ 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6항을 따른다.

⑧ ~ ⑩ (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

제18조(공무 외의 국외여행) ----
----- 범위-----

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

-----.